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

1

사다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

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고,

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견고한 구조로 할 것
2. 심한 손상·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
3.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
4.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
5.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
6.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7.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
8.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9.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.
10.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

-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

제42조(추락의 방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[작업발판의 끝·개구부(開口部) 등을 제외한다] 또는 기계·설비·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(飛階)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2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

1 공통사항

- 보통사다리(일자형 사다리), 신축형 사다리,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
-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
- 중대재해 발생, 고소·고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

2 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

- ①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②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 - 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
-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0cm이상~200cm미만인 경우
 -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
-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00cm이상~350cm이하인 경우
 -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
 -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

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에서는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

-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0cm 초과한 경우 :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(KC 미인증 또는 비대상 제품)

<붙임> 이동식사다리 종류별 안전작업 지침

보통(일자형) 사다리	신축형 사다리	(일자형으로 펼쳐지는)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
안전작업 지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(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) 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 	

발붙임 사다리 (A형, 조경용)	작업 높이	안전작업 지침
	120cm미만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
	120cm이상 ~ 200cm미만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○ 2인 1조 작업 ○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
	200cm이상 ~ 350cm이하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○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○ 최상부 발판+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
	350cm초과	○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
[공통사항]

-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- 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
-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